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 5. 4 선고 2019가단14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천

담당변호사 장승호

피 고 영덕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수

변 론 종 결 2021. 4. 13.

판 결 선 고 2021. 5. 4.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1,497,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2021.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197,299원, 원고 C에게 3,683,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2019. 10. 30.부터 경북 영덕군 D 도로 453㎡의 도로폐쇄일 까지 원고 A에게 월 694,092원,

원고 B에게 월 22,785원, 원고 C에게 월 70,11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 다. 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31,682,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영덕군 E 전 514평은 1961. 9. 15. D 전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다른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69. 5. 13.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1969. 5.

1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 C은 1985. 5. 31.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63/514 지분에 관하여 1973.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1989. 7. 14. G로부터 위 토지 중 217/514의 지분에 관하여 1989.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2003. 3. 10. H으로부터 위 토지 중 56/514 지분에 관하여 1980. 5.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9. 10. 30. 각 2014. 11. 2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C으로부터 위 토지 중 7,979/232,842 지분에 관하여, I로부터 위 토지 중 74/514지분에 관하여, J으로부터 위 토지 중 18,329/232,842 지분에 관하여, K로부터 위 토지 중 11/514 지분을, 원고 B으로부터 위 토지 중 18,686/232,842 지분에 관하여, L으로부터 위 토지 중 46/514 지분에

관하여, M로부터 위 토지 중 2/5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A이 위 토지 중 230,544/232,842 지분(= 원고 A이 기존에 보유한 98,301/232,842 지분 + 2019. 10. 30. 이전받은 105,243/232,842 지분)을, 원고 B이 위 토지 중 6,682/232,842 지분을, 원고 C이 위 토지 중 20,560/232,842 지분을, J이 위 토지 중 2,056/232,84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4. 10. 30. ~ 2019. 10. 29. 임료는 합계 41,721,300원이고, 2019. 10. 30.부터 임료는 월 794,000원이다.

라. J, 원고 B, C은 2020. 10. 7. 원고 A에게 '2014. 11. 25. ~ 2019. 10.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양도인들의 지분(J 18,329/232,842 지분, 원고 C 7,979/232,842 지분, 원고 B 18,686/232,842 지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사람들의 위임을 받은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I는 2020. 11. 27. 원고 A에게 2014. 11. 25. ~ 2019. 10. 29. I의 이 사건 토지 중 74/514지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I의 위임을 받은 원고 A은 그 무렵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10. 30. ~ 2019. 10. 29.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합계 17,613,856원(= 2014. 10. 30. ~ 2019. 10. 29. 이 사건 토지 임료 합계 41,721,300원 × 원고 A 98,301/232,842 지분,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다), J, I, 원고 B, C으로부터 양수받은 2014. 11. 25. ~ 2019. 10. 29. 부당이득반환채권 합계 13,883,470원[= J의 부당이득반환채권 3,240,997원{= 2014. 11. 25. ~ 2019. 10. 29. 부당이득반환채권 41,171,929원(= 2014. 10. 30. ~ 2019. 10. 29. 이 사건 토지 임료 합계 41,721,300원 - 2014. 10. 30. ~ 2014. 11. 24. 이 사건 토지 임료 549,371원1)} × J 18,329/232,842 지분} + 원고 C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410,874원{= 2014. 11. 25. ~ 2019. 10. 29. 부당이득반환채권

41,171,929원 × 원고 C 7,979/232,842 지분} + 원고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 3,304,123원(= 2014. 11. 25. ~ 2019. 10. 29. 부당이득반환채권 41,171,929원 × 원고 B 18,686/232,842 지분} + I의 부당이득반환채권 5,927,476원{= 2014. 11. 25. ~ 2019. 10. 29. 부당이득반환채권 41,171,929원 × I 74/514지분}], 원고 B에게 2014. 10. 30.부터 2019. 10. 29.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합계 1,197,299원(= 2014. 10. 30. ~ 2019. 10. 29. 이 사건 토지 임료 합계 41,721,300원 × 원고 B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6,682/232,842 지분), 원고 C에게 2014. 10. 30.부터 2019. 10. 29.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합계 3,683,999원(= 2014. 10. 30. ~ 2019. 10. 29. 이 사건 토지 임료 합계 41,721,300원 × 원고 C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560/232,842 지분)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31,497,326원(= 부당이득금 합계 17,613,856원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수금 합계 13,88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197,299원, 원고 C에게 3,683,9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부당이득 성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장래 이행기가 도래할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9. 10. 30.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들의 각 지분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694,092원(=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월 794,000원 × 원고 A 230,544/232,842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원고 B에게 월 22,785원(=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월 794,000원 × 원고 B 6,682/232,842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원고 C에게 월 70,110원(=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월 794,000원 × 원고 C 20,560/232,842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피고는 1989. 7. 14.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원고

피고는 악의의 무단점유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져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막연히 토지의 지목이 도로, 구거, 제방, 하천 등으로 변경된 때부터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시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토지에 관하여 매입이나 기부채납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쉽게 수긍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증명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88457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1989. 7. 14.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피고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입이나 기부채납 등 당시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미제출 사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1) 2014. 10. 30. ~ 2014. 11. 24. 이 사건 토지 임료 7,712,325원 × 26/365